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완 또는 방법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및 「축산법」에 따른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허가 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u>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u>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3조(사육 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u>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u></p> <p>2.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u>의 규정에 의한 <u>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 ·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u>의 규정에 의한 <u>도축장 및 축산법</u>의 규정에 의한 <u>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u></p>	<p>제1조(목적)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 ----- <u>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u></p> <p>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u>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애완 또는 방법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u></p> <p>2. <u>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u></p> <p>3. <u>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u></p> <p>4. <u>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u></p> <p>5. 「<u>수의사법</u>」에 따른 <u>동물병원 및 「축산법</u>」에 따른 <u>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u></p> <p>6. 「<u>동물보호법</u>」에 따라 <u>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u></p>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p> <p>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p> <p>②----- ----- -----위해(危害)-----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 -----.</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7조 <삭 제></p>